한의 요양(의료)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시행 안내

○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기관의 자율점검제 시범사업을 거쳐 **자율점검제 운영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**하였으며,

○ 심사평가원에서 **첩약 조제 당일 진찰료**와 관련하여 **한의 자율점검제를 시행함을 해당 요양기관에 안내하였음이 확인**되었습니다. 이에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□ 자율점검제 개요

○ 착오에 의한 부당청구 등 **개연성이 단순·반복적으로 확인**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그 내역을 **요양기관에 통지**하고, 요양기관은 **자체점검**을 통해 **청구행태**를 **자율적으로 개선**할 수 있도록 함

- 자율점검·반납 시 현지조사 면제 및 행정처분(과징금, 업무정지) 감면 혜택

□ 자율점검 사항

① **비급여대상 첩약조제 당일 진찰료 등 청구**하였는지 점검

- 첩약조제 당일 **진찰료만 청구**하였거나 **진찰료와 변증기술료만 청구**, **진찰료와 검사료만 청구**, **진찰료와 변증기술료 및 검사료만 청구**한 경우가 있는지 점검

② 요양(의료)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로 실시한 행위가 동일한지 점검

□ 점검 기관

○ 284개 기관

- 부당청구 개연성이 감지된 기관을 심평원에서 선정

□ 대상 기간

○ 통보대상기간*을 포함하여 최종 확인 시점까지

- * 통보대상기간 : 진료년월 기준 **2015년 7월 1일 ~ 2018년 6월 30일**

□ 제출기한

○ 자율점검대상 통보서 받은 날로부터 **14일 이내** 제출

□ 제출서류

① 점검 결과 및 사실 관계 서류
- **자율점검결과서**
- 수진자별 자료요청 명단의 **진료기록부, 검사결과지, 비급여가 포함된 진료비영수증, 진료비상세내역서, 첩약대장 및 본인부담수납대장** 등 사실 관계 자료

② 착오청구액 등의 반납 동의 관련 서류 제출 또는 자율점검결과서에 해당 내용 기재
③ 그밖에 주장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□ 제출방법

○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접수(팩스나 전자우편을 통한 접수 불가)
[(주소)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조사실 조사2부]

□ 행정처분 감면 제외대상

○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**자율점검에 따른 행정처분 감면 대상에서 제외**
1. 자율점검대상통보서를 받은 후 자율점검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
2. 점검결과 제출 과정에서 위・변조 자료 등 허위의 사실을 제출한 자
3.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・항목・횟수에 따라 반복해서 통보 받은 자

□ 기타 사항

○ **통보대상이 아닌 요양기관의 자진신고** 등의 경우에도 **동일한 신고 방법 및 절차**를 따름

□ 문의

○ 자율점검제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에서는 신고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안내드릴 예정이오니, 보험의약무정책팀(02-2657-5077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